제22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김재진 의원 발의】

2020. 12. 7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　　과

의안 제295호로 2020년 11월 12일 김재진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 등 마일리지 참여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정의 규정 삭제(안 제2조제11호)

나.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에 관한 규정(안 제2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건은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승용차요일제의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 마일리지 등 마일리지 참여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○ 주요 개정 내용은

- 안 제2조제11호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
- 안 제20조에서는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요일제의 대안책으로 제시된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「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따라,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관한 사항을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에코마일리지"란 전기, 수도, 도시가스, 지역난방 등 에너지절약에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.
2. "승용차마일리지"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.

제4조(적용대상) ① 에코마일리지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회원과 공동주택단지, 학교, 기업, 소상공인, 종교시설 등 사업자단체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승용차마일리지 대상차량은 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이며, 대상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이다. 그 외에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자동차, 렌터카, 사업용 자동차 등은 제외한다.

제7조(에코마일리지 운영) ① 시장은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하는 개인과 사업자단체 회원 등에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할 수 있으며,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장바구니,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참여자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·관리할 수 있도록 에코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.

제8조(승용차마일리지 운영) ① 시장은 차량 주행거리 감축 및 운행제한 참여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③ 승용차마일리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.